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21 선고 2018가단5115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9. 1. 31

판결 선고 2019. 2. 2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4,072,116원 및 그 중 32,696,19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18.11. 28. 까지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영풍